「군포도시공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안전보건 관리」 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 희

2022년 7월 22일

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69 호

# 군포도시공사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안전보건 관리 시행내규

##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군포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사자"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다.

2.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란 공사 사장, 경영시설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을 말한다.

3. “안전보건 전담조직”이란 공사 미래기획부(안전시설팀)을 말한다.

4.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를 말한다.

5. “관리감독자”란 사업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내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 관계법령, 공공기관 내규, 공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본 내규는 공사의 모든 사업 및 사업장과 공사에 소속된 근로자 및 공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이용시민, 외부손님, 공사가 발주하는 외부용역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편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 제1장 안전보건 경영책임자의 리더십

**제4조(안전보건 경영방침)** ①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경영방

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서명

2. 안전보건 경영방침 시행일

③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사 임직원을 포함한 종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 목표)** ①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매년 전사적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공사 임직원을 포함한 종사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경영검토 결과

2.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유해·위험요소 개선에 관한 사항

3. 직전년도 안전보건 활동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

4. 외부 및 내부 경영환경 등 기타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공사 사업부서는 제1항의 전사적 안전보건 목표를 바탕으로 매년 사업부서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안전보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① 공사는 전사적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구성원은 공사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 전담조직 업무)**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업무의 경우 외부에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로부터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1.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수립 및 점검

2.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 및 점검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및 점검

4. 안전보건예산 편성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

5. 안전보건 관련 업무수행자 업무수행 기준 마련 및 점검

6. 종사자 의견청취제도 관리 및 점검

7. 비상시 대응매뉴얼 마련 및 점검

8. 도급, 용역, 위탁 등 제3자 종사자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 및 점검

9.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0.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관리 및 점검

1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관리 및 점검

12. 그 밖에 공사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제반 업무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하고 이를 안전보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이행여부. 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실시주기에 따른다.

2. 안전보건 관련 인력 업무수행 점검

3. 종사자 의견청취에 따른 개선방안 이행여부 점검

4. 비상시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치여부 점검

5. 도급, 용역, 위탁 등 제3자 종사자 안전보건 조치여부 점검

6.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7.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 이행여부 점검

8. 그 밖에 안전보건 경영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②항의 업무에 대해 공사 안전보건조직 또는 관련사업부서에게 수행을 위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 제2장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8조(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①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이외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문인력은 관계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 전문인력 관리)**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관계법령상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 부여 및 예산 편성
2.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 및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 제3장 안전보건예산

**제10조(안전보건예산 편성)**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하 "안전보건예산"이라 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2.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3.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 및 공사가 정하는 예산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안전보건예산의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의 안전보건예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 내부 절차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예산 집행)**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예산을 집행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안전보건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장 종사자 참여

**제12조(종사자 의견청취제도 운영)** ①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 의견청취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 의견청취제도는 마련된 것으로 보며, 종사자 의견청취제도 구성,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및 공사 내규에 따른다.

1. 「산업안전보건법」 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②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종사자 의견청취제도와 별도로 종사자 의견청취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제13조(종사자 의견청취에 따른 개선조치 및 이행점검)** ①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제12조 종사자 의견청취제도를 통해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재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제1항의 개선방안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종사자에게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전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장 유해·위험요인 관리

**제14조(유해·위험요인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이하 이 조에서 "유해·위험요인 관리제도"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제1항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제도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

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장 재해대응체계 구축

**제15조(비상시 대응매뉴얼)** ① 관리감독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이하 이 조에서 "비상시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②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의 비상시 대응매뉴얼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할 것
2. 예상 가능한 비상사태에 대한 시나리오를 모두 포함할 것
3. 비상통제 조직의 업무분장을 세분화할 것
4. 비상시 대응매뉴얼의 문구는 분명하고 명료할 것

③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제1항의 비상시 대응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전담조직

은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제17조(안전보건 기준 및 절차)**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2.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3.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단, 본 호의 내용은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② 계약주관 부서는 제1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업체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점검)**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17조의 안전보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장 평가 및 개선

**제19조(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점검)**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교육 이행점검)**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법령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편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 제1장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22조(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①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2. 안전계획의 이행
3.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공사가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점검)**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

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보건예산

**제24조(안전보건예산 편성)** ① 관리감독자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관련 예산(이하 "안전보건예산"이라 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유지와 안전점검 등의 실시에 필요한 예산
2. 안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3.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관하여 관련 법령 및 공사가 정하는 예산

② 제1항의 안전보건예산에 관하여는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안전보건예산 집행)** 안전보건예산 집행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이행점검)**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24조와 제25조에 따라 안전보건예산의 편성·집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

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안전점검 계획

**제27조(안전점검 계획 수립·수행)**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공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계획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이행점검)**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안전점검 계획이 수립·수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장 안전계획

**제29조(안전계획 수립·시행)**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중이용시설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의 안전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그 수립 여부 및 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는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이행점검)**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안전계획이 수립·시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장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제31조(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 마련·이행)**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2. 공중이용시설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해당 사항의 신고·조치요구, 이용 제한, 보수·보강 등 그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등에 대한 긴급구호조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위험표지 설치 등 추가 피해방지 조

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고와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물에 대하여 비상상황이나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제1항의 재해예방 업무처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장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제32조(안전보건 기준 및 절차)**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제3자에게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중이용시설과 그 이용자나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2.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무 수행 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② 계약주관 부서는 제1항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3조(이행점검)**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32조의 안전보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 또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평가 및 개선

**제34조(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점검)**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교육 이행점검)**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이수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② 안전보건 전담조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편 보칙

**제36조(서면 보관)** 안전보건 전담조직은 본 내규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 관 부 서 | | 미 래 기 획 부 |
|---|---|---|
| 입안자 | 직 위<br>성 명 | 미 래 기 획 부 장<br>박 인 희 |
| | 직 위<br>성 명 | 안 전 시 설 팀 장<br>이 영 남 |
| | 담당자 성명<br>(전 화) | 최 병 민<br>( 3 8 0 - 5 8 1 7 ) |